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행일 : 2020-04-13]

(제정) 2015-10-06 조례 제 1365호
 (일부개정) 2020-04-13 조례 제 2495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부서연락처 : 064-710-685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모든 도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과 제주자치도의 인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4. 인권 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

5. 인권 인식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 계획
6.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홍보
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개발
3. 인권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4.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적인 제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13.>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권보고서에 관한 사항
7.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한 2인
2.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3.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4.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7. 학계 및 법조계에서 추천한 2인
8.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3인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8호에 따른 공모절차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따른 진정으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고발 및 징계권고를 당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2.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제13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국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3년 주기로 제주자치도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규칙 또는 정책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는 국제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인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5.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센터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2495호, 2020.4.1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